

서울특별시의회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물이용부담금 폐지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80
----------	-----

2011년 6월 24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1년 6월 13일, 박운기 의원의외 22인  
나. 회부일자 : 2011년 6월 13일  
다. 상정일자 :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1년 6월 24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운기 의원)

가. 주 문

- 지난 1999년 이후 서울시민은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상류지역 주민지원 등의 명분으로 현재까지 1조 5,500억여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해 오고 있으나 상수원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 특별법’)」의 제정 및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상수원 주변 지역의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고 있으며,
- 5개 시·도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수동적인 수질보전활동으로 인해 수질개선은 물론 유역공동체 구축 등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서울시민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은 애초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음.
- 따라서 정부는 팔당상수원에 대한 중장기 수질대책을 마련하여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고 「친수구역 특별법」 폐지 및 4대강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권한의 지방정부이양 및 민간참여를 보장하며, 나아가 물이용부담금을 폐지하고 서민의 부담경감·투명한 운영·납세자 권리보호가 가능한 세금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함.

## 나. 제안이유

-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의 물을 공급받는 수혜자로서 상수원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상류 상수원 지역 주민들의 권리보장에 대한 동의로 2005년까지 상수원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고 주민지원을 책임진다는 전제하에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도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지난 1999년 이후 서울시민은 1조 5,500억여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해 오고 있으나, 5개 시·도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하는 수계관리위원회는 수동적인 수질보전활동으로 인해 수질개선은 물론 유역공동체 구축 등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며, 현행 정부의 팔당상수원 수질정책은 어렵게 합의한 물이용부담금의 애초 취지마저 무색하게 만들고 있고 4대강 사업과 「천수구역 특별법」으로 인한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고 있어 상수원 수질악화가 예상됨으로,
- 서울특별시의회는 정부가 팔당상수원에 대한 중장기 수질대책을 마련하여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고 「천수구역 특별법」 폐지 및 4대강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권한의 지방정부이양 및 민간참여를 보장하며, 나아가 국민의 90%가 부담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을 폐지하고 서민의 부담경감·투명한 운영·납세자 권리보호가 가능한 세금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4. 이송처

서울특별시, 환경부

##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청수)

- 본 안건은 정부가 팔당상수원에 대한 중장기 수질대책을 마련하여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고 「천수구역 특별법」 폐지 및 4대강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상수원 수질관리에 대한 권한의 지방정부이양 및 민간참여를 보장하며, 나아가 물이용부담금을 폐지하고 서민의 부담경감·투명한 운영·납세자 권리보호가 가능한 세금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안된 것임.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란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에 의해 팔당호 및 팔당댐 하류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가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써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25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통합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고지하는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 한강법 제22조에 의해 토지매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운영,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 수계 관리위원회 운영,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와 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규제를 받는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기타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고 있음.
- '99년 이후 2010년까지 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은 총 3조 4,202억원으로 서울시는 징수액의 45.7%인 1조 5,629억원을 분담하고 있으나, 교부율은 2010년 기준 2.6%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80원→170원<sup>1)</sup>/m<sup>3</sup>)하여 한강 원수비(47.93원/m<sup>3</sup>) 보다 3.5배나 높은 실정임.

[2010년도 시·도별 기금 배분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계	사무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금 액	4,195	1,390	112	12	1,767	643	271
비 율	100%	33.1%	<b>2.6%</b>	0.3%	42.2%	15.3%	6.5%

- 한편, 물이용부담금은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이라는 특정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외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수질개선의 목표와 개선기간, 개선비용 등을 고려하여 물이용부담금의 재원확보 등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수질목표와 연동된 계획이 전무하고 이러한 상태로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한다면 당초 한시적인(2005년까지) 부담금제도라는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게 되며 향후 몇 년간 더 징수할 계획인지 대한 구체적인 방향도 불분명한 상태에 있으므로 상수원 수질보전 및 개선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물이용부담금 운용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물이용부담금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사무국(한강유역환경청)이나 실무위원회가 환경부 주도로 구성·운영됨에 따라 유역관리 방향의 기본취지에 쉽게 부합되기 못하여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기 어렵고 사무국에서 상정하는 안건 등에 대해 광역시·도의 실무위원은 협의하거나 건의사항을 제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원관리나 물이용부담금 운용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 등 유역공동체 구축 등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상수원 수질관리에 대한 권한을 해당 지자체에 이양하고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유역공동체가 스스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1) 2011.1.1일부로 m<sup>3</sup>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인상됨

- 물이용부담금의 목적 중 하나는 한강수계에 0.5~1km 폭의 수변구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수변구역의 설정은 전체 한강을 따라 0.5~1km 폭의 토지를 매수하여 완충지역으로 설정하고 건축물이나 축산농가, 공장 등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수변구역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사용하는 것은 한강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물이용부담금 시행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강수계 수변구역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강수계 수변구역 설정은 입법 당시에는 의무설정을 계획하였으나 임의 설정제로 바뀌면서 10년 사이에 수변구역의 토지가격이 급증하였고 상류 시·군의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사실상 수변구역의 토지매수가 어렵게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
- 또한 현재까지 물이용부담금 및 한강수계 유역관리정책의 주요 관리대상 오염물질은 BOD와 관련되어 왔고 BOD의 경우 감소(안정화) 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COD, T-N, T-P 등의 오염물질 농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팔당호 인근의 규제완화와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천 유지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보를 설치하는 등의 4대강 사업에 따라 체류시간이 증가하여 하천(호소)의 부영양화 등으로 인해 상수원 수질오염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그리고 현행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통합고지서에 수도요금과 구분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부과되어 있어 많은 시민들은 물이용부담금을 수도요금으로 생각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도요금과 분리고지하여 분리 징수하는 방안이나 더 나아가서는 국민 권익을 위해 법령에서 정해야 할 부과절차, 부담률 등의 규정을 법령이 아닌 고시·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어 징수 및 기금 집행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국회나 시·도의 관리·평가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어 물이용부담금을 폐지하고 세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이와 같이 천만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개선과 현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서 본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물이용부담금 폐지

### 촉구 결의문

지난 1999년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한강특별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2010년까지 서울시민은 1조 5,500억여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내왔다. 이는 상수원의 물을 제공받는 수혜자로서 상수원 수질개선에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과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상수원 지역 주민들의 권리보장에 대한 동의로 가능했다. 한강수계법상에는 시한이 정해져있지 않았지만 당시 이런 사회적 논의는 2005년까지 정부가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고 주민지원의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졌다.

한강수계법 제정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서울을 포함해서 한강수계에서 걷히는 물이용부담금만 연간 4,000억원이며, 10여년간 걷은 돈은 3조 5,000억원에 이른다. 세금까지 포함하면 약 11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돈이 팔당상수원에 들어갔다.

천만 서울시민의 생명수와 같은 팔당 상수원은 각종 개발계획과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질악화 위협에 무방비상태로 버려져있었다. 그동안 내온 물이용부담금으로 토지매수는 커녕 개발을 지원하는 하수처리시설 건설에 그쳤으며, 심지어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악화될 수질의 설거지 기금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물이용부담금과 관련한 최소한의 자료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5개시도와 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하는 수계관리위원회는 수동적인 수질보전과 유역공동체 구축 등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물이용부담금은 환경부의 쌈짓돈이 되어버렸다. 서울시 역시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제안이나 요청없이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상수원 관리는 방치해왔다.

이토록 무책임한 정부의 팔당 수질 정책은 어렵게 합의한 물이용부담금의 애초 취지마저 무색하게 만들고 있으며, 거대한 댐 건설과 준설을 강행하는 4대강사업과 친수법으로 인한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오늘 천만 서울시민은 분노할 수 밖에 없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인천시의회, 경기도의회 4대강특위와 공동으로 상수원 수질개선 방안과 물이용부담금의 합리적 이용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형태로의 전환을 위한 검토를 진행해왔으며, 팔당 개발현장과 한강유역환경청 등의 시찰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정부의 상수원 대책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우리 서울시의회는 정부의 무책임한 수질정책을 준엄하게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를 한다.

1. 정부와 서울시는 팔당수계 수질대책의 실패를 천만 서울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상수원을 위협하는 대규모 개발을 호위하는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및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국민의 90%가 부담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을 폐지하고, 서민의 부담 경감 · 투명한 운영 · 납세자 권리보호가 가능한 세금으로 전환하라. 이를 위해 우리는 물이용부담금의 전입을 반대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다.
3. 정부는 상수원 수질 정책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권한의 지방이양 및 민간참여를 보장하라.
4.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서울시의회는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등의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를 포함하여 더욱 강경한 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1년 6월 13일

서울시의회 의원일동